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”을 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”으로, “제출”을 “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2장”을 “1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청자에 대하여”를 “신청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고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별표 3의 텃밭의 운영규모 기준란 중 “100제곱미터”를 “50제곱미터”로 한다.
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3(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<u>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</u> (이하 “농정원장”이라 한다)에게 <u>제출</u> 하여야 한다.	제6조의3(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</u> ----- ----- <u>제출(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)</u> ----- --.
1.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<u>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</u>	<삭 제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사진 3.5cm×4.5cm. 이하 같다) <u>2장</u>	3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장</u>
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	② -----

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농림축산
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
을 신청하여야 한다. <단서 신
설>

③ ~ ⑦ (생 략)

--- 신청에 대하여 「전자정부
법」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
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
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
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
하고 ---. 다만, 신청인이 확인
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
한다.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도시농업공동체의 운영규모 기준 (제7조제1항제2호 관련)

구 분	운영규모 기준	
텃 밭	50제곱미터 이상	
곤충사육	물방개류, 사슴벌레류, 하늘소류, 풍뎅이류, 나비류, 반딧불이류, 수서곤충류 중 1종 이상	250마리 이상
	매미류, 꽃무지류, 노린재류, 메뚜기류, 여치류 중 1종 이상	500마리 이상
	귀뚜라미류	7,500마리 이상
	개미류	3군체 이상
양 봉	봉군(꿀벌 1~2만 마리 기준) 5개 이상	

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[] 발급
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[] 변경발급 신청서
[] 재발급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한	30일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		
	주 소	전 화 번 호			
취득 자격증	자격종목				
	자격번호		합격연월일		
변경사항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재발급 신청사유	재발급 신청사유 [] 분실 [] 훼손 [] 기타() 사유가 발생한 날				

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1항·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·제5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

귀하

첨부서류	1. 발급 신청의 경우 가.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 이수증 1부 나. 사진(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여권용 사진 3.5cm×4.5cm, 이하 같음) 1장	수수료 없 음
	2. 변경발급 신청의 경우: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,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1장	
	3. 재발급 신청의 경우: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(훼손된 경우만 해당) 및 사진 1장	
담당자 확인사항	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동의 [], 미동의 [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

1. 본인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,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, 변경, 재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동의 [], 미동의 []

2. 위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증 발급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동의 [], 미동의 []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작성 방법

1. 신청인 "주소"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정확하게 적고, 주소 끝의 괄호 안에 우편번호를 적어야 합니다.
- [예] ○○도 ○○시(군) ○○동(면) ○○로 ○○(△△△△△)
- * 시·도 명칭은 두 글자 약칭을 사용하여도 됩니다.(서울특별시→서울, 충청북도→충북)
2. "취득 자격증"란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작성합니다. "자격종목"에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명칭을 작성하고, 자격번호, 합격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.
- * 예시) 자격종목 : 유기농업기능사 / 자격번호 : 00-000000(기재방식은 자격종목에 따라 다름) / 합격연월일 : 2000.01.01
3. "변경사항"란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야 합니다.

처리 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